

## 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,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

- 급성기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총 38개소 지정,  
789병상 확보 -

- 집중치료병상 2030년까지 2,000개 병상 목표, 지역 균형 확충 추진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7월 1일(수)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(이하 '집중치료병원')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.

‘집중치료병원’은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,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,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·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. 작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 1차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.

이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방안으로 도입하였으며, 그간 △법적 근거\* 마련, △강화된 인력·시설기준 마련, △‘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’ 신설 등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상 강화를 추진하였다.

\*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9조의2, 시행규칙 제12조의2~제12조의4 신설 및 「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

집중치료병원은 △집중치료실병상의 10~20%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여야 하며, △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·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.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,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 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번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종합병원과 민간 정신병원 및 1차 공모 대상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 정신병원 중 미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. 이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 치료병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소 283개 병상\*을 지정하였다.

\* 상급종합병원 2개소 36개 병상, 종합병원 3개소 48개 병상, 정신병원 7개소 199개 병상

1차 및 2차 지정기관은 총 38개소(상급종합병원 25개소, 종합병원 3개소, 정신병원 10개소) 789개 병상이다.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로 타 진료과 협진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,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.

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응급 상황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치료실병상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% 이상을, 정신병원은 20% 이상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1차, 2차 지정을 통해 지금까지 확보된 정신응급 병상은 총 130개이다(1차 72개, 2차 58개).

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,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2,0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.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.

한편 제1기 3차 공모는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의료기관 및 1차, 2차 공모 대상 중 미지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.

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“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면서 “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개선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”라고 전했다.

- <붙임> 1.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  
 2. 1차,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  
 3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 개요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보건복지부<br>정신건강정책과           | 책임자 | 과 장 | 우경미 (044-202-3860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황지숙 (044-202-3866) |
|              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<br>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 | 책임자 | 부 장 | 방현주 (033-739-5830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팀 장 | 박동혁 (033-739-5860) |



**붙임1****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**

(단위 : 개)

| 연번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          | 종별 | 기관명              | 집중치료실 병상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<br>(2개소) | 상급 |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 | 20       |
| 2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정신 | 서울특별시은평병원        | 28       |
| 3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기<br>(3개소) | 종합 |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    | 12       |
| 4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정신 | 아주편한병원           | 39       |
| 5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정신 |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 계요병원 | 24       |
| 6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천<br>(2개소) | 종합 | 인천광역시의료원         | 20       |
| 7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정신 | 인천참사랑병원          | 30       |
| 8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북<br>(1개소) | 정신 |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   | 40       |
| 9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남<br>(1개소) | 정신 | 보은병원             | 18       |
| 10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원<br>(1개소) | 종합 | 강원대학교병원          | 16       |
| 11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<br>(1개소) | 정신 | 다움병원             | 20       |
| 12                         | 울산<br>(1개소) | 상급 | 울산대학교병원          | 16       |
| 합계(총 12개소 : 상급2, 종합3, 정신7)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283      |

**붙임2**
**1차,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**

(단위 : 개, 개소수 별도 미표기한 경우 1개소)

| 연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           | 종별       | 집중치료실 병상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<br>(13개소) | 상중(11개소) | 172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정신(2개소)  | 78         |
|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(2개소)      | 상중       | 2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정신       | 20         |
|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구(4개소)      | 상중(4개소)  | 64         |
|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천(4개소)      | 상중(2개소)  | 33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종합       | 2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정신       | 30         |
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광주(1개소)      | 상중       | 26         |
|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울산(1개소)      | 상중       | 16         |
|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기(6개소)      | 상중(3개소)  | 36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종합       | 12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정신(2개소)  | 63         |
|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원(1개소)      | 종합       | 16         |
|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충남(2개소)      | 상중       | 2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정신       | 31         |
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북(2개소)      | 상중       | 3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정신       | 40         |
|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남(2개소)      | 정신(2개소)  | 62         |
| <b>합계(총 38개소 : 상중25, 종합3, 정신10)</b> |              |          | <b>789</b> |

※ 미보유 시도(6) : 대전, 세종, 충북, 경북, 경남, 제주

- (추진목표)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적기에 집중치료를 제공하여 조속한 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 도모, 치료난이도를 고려한 적정 보상을 통해 개선된 치료 인프라 확충
- (추진근거)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)
 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(대상기관)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중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를 필요한 인력·시설 기준 등을 갖춘 기관
- (지정목표) '25년 1,134개 시범병상 → '30년 2,000개 집중치료실 병상
- (지정기간) 3년
- (보상) ①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(초기 14일 가산), ②정신 의학적응급처치 100% 가산, ③개인정신치료·가족치료·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횟수 확대 ※ 집중치료실 입원 시 최대 30일간, 건강보험·의료급여 환자 동일
 

① 예 : 상종 41.3만 원(1~7일), 34.4만 원(8~14일), 27.5만 원(15~30일) (4인실 간호관리료차등제 S등급 기준)  
 ② 예 : 상종 6.38만 원 → 13.0만 원  
 ③ 예 : 개인정신치료(1일 1회→2회), 가족치료(개인) (1일 1회·주3회→1일 2회·주7회), 작업 및 오락요법(입원 주5회→주7회)
- (지정기준) 3개 분야 11개 절대평가 항목 등

| 영역    | 지정기준(절대평가 항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력    |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당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수<br>② 간호사 1명당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수<br>③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당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수<br>④ 원내 당직의료인 배치<br>⑤ 행정인력 배치(겸임가능) |
| 시설    | ⑥ 집중치료실 병상 수, ⑥-① 집중치료실 내 응급입원용 병상 설치<br>⑦ 집중치료실이 있는 폐쇄병동 내에 보호실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의 질 | ⑧ 24시간 응급입원 가능 기관(공휴일 포함)<br>⑨ 의료기관 인증기관<br>⑩ 영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<br>⑪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